

## 복지권리 안내수첩

제작 2015. 7. 15.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진보연대 /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평화주민사랑방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홀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후원 아름다운재단

문의 빈곤사회연대 02-706-1233

# 복지권리 안내수첩

2015년 7월 기준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고 빈곤층에게 더  
도움이 되는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민생보위에는 40여개의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2014년 12월 개정안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생보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리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보가 궁금하면 복지상담전화 02-706-1233  
으로 문의 바랍니다.



# 목차

## 1부. 빈곤층, 이러한 복지를 이용해봅시다 ————— 0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 2부. 수급권자 권리선언, 빈곤층 복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 19

- 수급신청을 해 봅시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점, 이렇게 바꾸자 ————— 31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살인장벽 ‘부양의무자기준’
- ‘최저생계비’해체 = ‘권리’해체
- 복잡한 선정기준, 제도가 어려우면 이용하기도 어렵다
- 제멋대로 근로능력평가
- 줬다 뺐는 기초연금
- 가짜소득

## 4부. 부록 ————— 37

- ❶ 공공임대주택 정책 둘러보기
- ❷ 의료지원정책 둘러보기
- ❸ 답답할땐? 상담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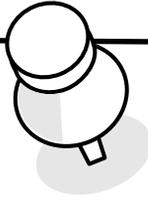
민생보위 소개



## 1부

# 빈곤층, 이러한 복지를 이용해 봅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 급여별 선정 기준

아래 기준보다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 등이 소득으로 파악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표1. 급여별/가구급여별 선정 소득기준<sup>1</sup> (단위 : 원)

구분	생계급여 (중위소득 2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 가구	437,454	624,935	671,805	781,169
2인 가구	744,855	1,064,078	1,143,884	1,330,098
3인 가구	963,582	1,376,546	1,479,787	1,720,682
4인 가구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5인 가구	1,401,037	2,001,481	2,151,592	2,501,851
6인 가구	1,619,764	2,313,948	2,487,494	2,892,435
7인 가구	1,838,491	2,626,416	2,823,397	3,283,02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 7인 기준 금액에서 1인 증가시마다 218,727원을 더합니다
- 의료급여 : 7인 기준 금액에서 1인 증가시마다 312,468원을 더합니다
- 주거급여 : 7인 기준 금액에서 1인 증가시마다 335,903원을 더합니다
- 교육급여 : 7인 기준 금액에서 1인 증가시마다 390,585원을 더합니다

1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2. 재산기준

###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표2. 근로능력유무/주거지규모별 기본재산액 (단위: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 능력자 가구	5,400	3,400	2,900
근로 무능력자 가구	8,500	6,500	6,000

### 금융재산

가구당 500만원씩 공제합니다. (수급자,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 자동차

- 1-3급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의 경우 월 4.17%의 소득환산을 적용합니다.(이 외에는 월 100% 소득환산 적용)
  - ① 차령 10년 이상 1600cc이하의 자동차
  - ②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③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 ④ 2000cc미만 4~6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 ⑤ 1600cc 미만 생업용자동차

###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즉, 부모, 자식, 계부, 계모, 사위, 며느리를 포함합니다(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교육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양능력유무를 판정하여 수급자로 선정/탈락되거나, 선정되더라도 간주부양비 부과로 급여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표3.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단위 : 원)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부양능력 판정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인	무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유	2,187,272 (2,312,259)	3,285,131 (3,285,131)	4,066,299 (4,066,299)	4,847,468 (4,847,468)	5,628,637 (5,628,637)
2인	무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유	2,626,415 (3,124,674)	3,724,274 (3,937,090)	4,505,442 (4,515,154)	5,286,611 (5,286,611)	6,067,780 (6,067,780)
3인	무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유	2,938,883 (3,702,739)	4,036,742 (4,515,154)	4,817,910 (5,093,219)	5,599,079 (5,671,284)	6,380,248 (6,380,248)
4인	무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유	3,251,350 (4,280,804)	4,349,209 (5,093,219)	5,130,377 (5,671,284)	5,911,546 (6,249,349)	6,692,715 (6,827,414)
5인	무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유	3,563,818 (4,858,869)	4,661,677 (4,661,677)	5,442,845 (6,249,349)	6,224,014 (6,827,414)	7,005,183 (7,405,479)

- 부양능력판정 미약은 없음과 있음 금액 사이로, 간주부양비가 부과됩니다.  
(미혼자녀와 아들 30%, 결혼한 딸 15%)
- (괄호)안의 금액은 수급(권)자 가구원 모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입니다.

표4. 부양능력 판정 재산기준 (단위: 원)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1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562,441	760,056
	대도시	일반재산*	241,487,801	246,226,761	
		주거용재산**	282,080,896	301,082,302	
	중소도시	일반재산	149,487,801	154,226,761	
		주거용재산	190,080,896	209,082,302	
	농어촌	일반재산	114,987,801	119,726,761	
		주거용재산	155,580,896	174,582,302	
	2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760,056
대도시		일반재산	246,226,761	250,965,721	
		주거용재산	301,082,302	320,083,708	
중소도시		일반재산	154,226,761	158,965,721	
		주거용재산	209,082,302	228,083,708	
농어촌		일반재산	119,726,761	124,465,721	
		주거용재산	174,582,302	193,583,708	
3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900,666
	대도시	일반재산	249,598,709	254,337,669	
		주거용재산	314,602,517	333,603,923	
	중소도시	일반재산	157,598,709	162,337,669	
		주거용재산	222,602,517	241,603,923	
	농어촌	일반재산	123,098,709	127,837,669	
		주거용재산	188,102,517	207,103,923	
	4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041,277
대도시		일반재산	252,970,662	257,709,622	
		주거용재산	328,122,750	347,124,156	
중소도시		일반재산	160,970,662	165,709,622	
		주거용재산	236,122,750	255,124,156	
농어촌		일반재산	126,470,662	131,209,622	
		주거용재산	201,622,750	220,624,156	
5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1,181,887
	대도시	일반재산	256,342,614	261,081,574	
		주거용재산	341,642,983	360,644,388	
	중소도시	일반재산	164,342,614	169,081,574	
		주거용재산	249,642,983	268,644,388	
	농어촌	일반재산	129,842,614	134,581,574	
		주거용재산	215,142,983	234,144,388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재산액

\*\*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재산액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900,666	1,041,277	1,181,887
249,598,709	252,970,662	256,342,614
314,602,517	328,122,750	341,642,983
157,598,709	160,970,662	164,342,614
222,602,517	236,122,750	249,642,983
123,098,709	126,470,662	129,842,614
188,102,517	201,622,750	215,142,983
1,098,281	1,238,891	1,379,502
254,337,669	257,709,622	261,081,574
333,603,923	347,124,156	360,644,388
162,337,669	165,709,622	169,081,574
241,603,923	255,124,156	268,644,388
127,837,669	131,209,622	134,581,574
207,103,923	220,624,156	234,144,388
1,238,891	1,379,501	1,520,112
257,709,617	261,081,570	264,453,522
347,124,138	360,644,371	374,164,604
165,709,617	169,081,570	172,453,522
255,124,138	268,644,371	282,164,604
131,209,617	134,581,570	137,953,522
220,624,138	234,144,371	247,664,604
1,379,501	1,520,112	1,660,722
261,081,570	264,453,522	267,825,475
360,644,371	374,164,604	387,684,837
169,081,570	172,453,522	175,825,475
268,644,371	282,164,604	295,684,837
134,581,570	137,953,522	141,325,475
234,144,371	247,664,604	261,184,837
1,520,112	1,660,722	1,801,333
264,453,522	267,825,475	271,197,427
374,164,604	387,684,837	401,205,069
172,453,522	175,825,475	179,197,427
282,164,604	295,684,837	309,205,069
137,953,522	141,325,475	144,697,427
247,664,604	261,184,837	274,705,069

위의 기준은 재산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일 뿐,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구청 혹은 복지상담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표5에 나와 있는 최대 보장수준에서 실제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제하고 책정됩니다.

표5.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

가구 규모	201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중위소득28%)
1인 가구	437,454
2인 가구	744,855
3인 가구	963,582
4인 가구	1,182,309
5인 가구	1,401,037
6인 가구	1,619,764
7인 가구	1,838,491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에 1인 추가시마다 218,727원을 더합니다.

## 2. 주거급여

### ① 임차가구

-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임차료는 보증금을 연이율 4%를 적용하여 임차료를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임차료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 공공기관(LH, S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 거주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공공기관 명의로 계좌로 지급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부과·고지·수납합니다.

### 보증금을 임차료로 환산하는 방법 예시

예시1) 보증금 1,000만원, 월 임차료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월 13.3만원으로 산출  
산식 :  $[1,000\text{만원} \times 0.04 \div 12] + 10\text{만원} = 3.3\text{만원} + 10\text{만원} = 13.3\text{만원}$

예시2) 보증금 2,000만원, 월 임차료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월 12.6만원으로 산출  
산식 :  $[2,000\text{만원} \times 0.04 \div 12] + 6\text{만원} = 6.6\text{만원} + 6\text{만원} = 12.6\text{만원}$

표6.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외)
1인 가구	19	17	14	13
2인 가구	22	19	15	14
3인 가구	26	23	18	17
4인 가구	30	27	21	19
5인 가구	31	28	22	20
6인 가구	36	33	25	2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는 2인 증가할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시킵니다. 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산정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여 차감 후 지급됩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합니다.

## ㉔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sup>1)</sup>(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항목)

1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주택의 노후도 평가 항목

구조안전(3개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표7. 주택개량 지원내용<sup>2</sup>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3. 의료급여

-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은 표8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해 지원됩니다. (비급여, 선택진료과목 등 제외)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통급자
- **2종** :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표8.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내용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sup>2</sup>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음

#### 4. 교육급여

- 가구원 중,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경우 표9와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9. 교육과정별 교육급여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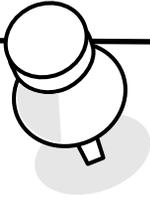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2학기 분할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 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금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3·6·9·12월)지급
	입학급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5. 해산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인당 6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 6. 장제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구당 75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긴급복지가 필요할 때!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지원요청 혹은 신고가 있을 때,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한 후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즉,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긴급성'입니다. 이 '긴급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④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⑤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85%(1인기준 114.1만원, 4인기준 308.6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표10.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과 금액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0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1만원 (대도시,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7만원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등 20.9만원</li> <li>중등 33.3만원</li> <li>고등 40.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li> </ul>	2회
그밖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li> <li>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0,800 / 월</li> <li>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li> </ul>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li> <li>상담 등 기타 지원</li> </ul>		횟수 제한 없음	

-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지원 대상은 아니나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만 예외로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 생계지원

표11. 가구별 긴급생계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04,6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2. 주거지원

표12. 가구별 긴급주거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구성원수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65,800	607,800	801,700
중소도시	239,800	399,600	526,700
농어촌	138,000	229,900	302,7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6,800원, 중소도시 63,500원, 농어촌 36,3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 3. 교육지원

표13. 가구별 긴급교육급여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09,400	333,300	408,4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 4. 그 밖의 지원

표14. 기타 긴급지원내용 및 금액 (단위 : 원)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0,8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 2부

수급권자 권리선언, 빈곤층 복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수급신청, 이의신청시 꼭 알아두자!

# 수급신청을 해 봅시다

그림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과정



## 1. 수급신청

- 수급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가서 합니다.
- 구비해 갈 서류(필수): 신분증,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급여를 받을 통장, 도장
- 아픈 곳이 있다면 각종 진단서도 꼭 떼어가세요.

### 수급신청 시 작성해야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수급신청 시 작성해야할 서류 작성 예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필수 입력사항

#### (앞면)

- ① 신청인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기입
- ② 가족사항에는 함께 거주 중인 가족사항 기입
- ③ 부양의무자에는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기입

#### (뒷면)

- ① 뒷면에서 받고자 하는 급여 항목에 모두 √ 표시
- ② 급여계좌에 구비해간 통장 정보 기입
- ③ 원하는 통지방법(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전화 등 기타) 선택

<b>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b>							처리기간 별도안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40101-1234567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전화번호	02-706-1233	
	주소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휴대전화	011-706-1233
		전자우편							antipoorkr@gmail.com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 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부인	김영희	370202-1234567	동거	-	고혈압	없음	없음	02-706-1234
※ 배우자 관계 (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	전화 번호
	홍길동의 아들	홍00	123456-1234567	서울 00구 00동 000	모름	모름	모름	없음	모름
	의								
	의								
	의								
	의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거나, 교육급여만 신청하거나 받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제외함)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주 소
본인	홍길동	340101-1234567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서명 또는 인)
아들	홍반장	580000-1234567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인복지지원법>, <초·중·고 교육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2015년 07월 15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작성방법

- ① 수급가구의 세대주 인적사항, 부양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② 부양의무자로부터 직접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주민센터 혹은 구청에서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합니다.
- ③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급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b>소명서</b>	
1. 제목	<b>부양의무자 관계단절 소명</b>
2. 당사자	성명 <b>홍길동</b>
	주소 <b>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b>
3.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현재 아는 동생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폐지를 주위 생계를 꾸렸으나 다친 이후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li> <li>• 슬하에 아들이 한 명 있지만 이혼한 후 집을 나와 연락이 끊긴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을 받기 어렵습니다.</li> </ul>
4. 기타	
<p>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15년 7월 15일</p> <p>의견 제출인</p> <p>주소 : 서울시 중로구 홍길동 1017번지 (전화 : 02-706-1233)</p> <p>성명 : 홍길동 (서명 또는 인)</p> <p><b>종로 1~4가 동장 귀하</b></p>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ol>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절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소명서에는 수급자 본인의 이름, 주소지, 단절 사유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 2. 급여별 심사

- 소득기준 및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급여별 담당 부처에서 선정여부 심사합니다.
- 30일 내에 처리 후 통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3.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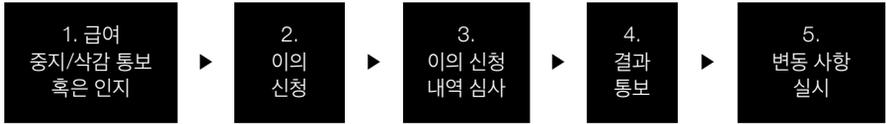
-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수급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시 본인에게 적절한 통지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급여 실시

- 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간주, 선정될 시 신청일로부터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통장에 지급된 각 급여액과 00p에 있는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비교하여 확인해봅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통장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2.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및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



## 1. 급여 중지/삭감통보 혹은 인지

- 급여의 중지, 삭감 등 변동 통보를 받거나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2.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다음 양식에 사유를 작성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도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구두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주민센터/구청 직원이 대신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3. 이의신청내역 심사

- 30일 내에 처리 후 통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4. 결과 통보

- 수급신청결과 통보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수급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 본인에게 적절한 통지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의신청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 번 더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변동사항 실시

- 급여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소급적용하여 변동 내역을 실시합니다.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b>홍길동</b>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b>340101-1234567</b>		
	주소	<b>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b>			전화번호	<b>02-706-1233</b>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b>2015년 9월 20일</b>				
<input type="checkbox"/>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b>부양의무자 소득기준으로 인한 급여 삭감</b>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b>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된 상황입니다.</b>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2015년 09월 30일</b></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b>홍길동</b> (서명 또는 인)</p> <p><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b></p>						
안내	<p>1.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처리 합니다.</p> <p>2.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보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시·군·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결정통지 처리합니다.</p> <p>3.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승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p>					
구비서류	<p>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수수료 없음	

**※ 누구나 부담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한 수급신청과 마찬가지로 구두로 거절당해선 안 됩니다.**

##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수급자의 권리

### 1. 부양의무자기준 탈락?

-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탈락했지만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을 시 소명을 통해 수급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최근에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기준에서 탈락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 각 지자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양의무자와의 부양 단절을 인정하고,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2. 근로능력평가와 조건부수급?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을 받게 됩니다.
- 2014년부터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고용센터에서 우선 상담을 받게 됩니다. 건강상, 개인적인 사유로 일반 시장취업이 어려운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 내려지거나 수급비 삭감,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에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3. 수급자의 권리!

-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전 국민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빈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복지 수급의 신청과 이용과정에 낙인감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 사회권은 이 사회에 사는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적극적인 인권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의 사회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 누구나 평등하게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는 잘못된 복지제도에 제도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현재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는 선정기준이 너무 낮고, 선정된다 할지라도 보장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복지수급자는 잘못된 복지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지수급자의 힘으로 더 나은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복지수급자들의 현실을 더 낮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예비 빈곤층(가난에 빠질 수 있는 모든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 ③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점,  
이렇게 바꾸자**

##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살인장벽 '부양의무자기준'

연락이 닿지 않는 부모, 자식, 사위, 며느리에게 까지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살인적인 진입장벽입니다.

정부는 이번 부양의무자기준의 소득기준 완화로 12만 명의 신규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 117만 명의 1/10수준에 불과하며, 3년간 줄어든 수급자 20만 명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한국사회 빈곤현실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족에 대한 효(孝)를 실천하기 위한 덕목이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도 가족과 개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 빈곤해결을 방치하는 폭력입니다.

사각지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이미 수급신청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연락도 하지 않는 아들/딸과 사위, 그리고 이혼한 전 남편의 재산과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 해소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한국사회 빈곤은 해결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2. '최저생계비'해체 = '권리'해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낮은 선정기준 탓에 수급자가 되기 너무 어렵고, 수급자가 되더라도 너무 적은 급여만을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다는 문제점에서 기인했습니다. 1999년 처음 도입되던 당시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임금의 40%로 출발했으나 2009년 30%로 그 상대적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체가구 중위소득 기준으로 40%에 불과, 우리나라의 빈곤선으로서 그 기능하기에 너무 낮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대적 기준의 빈곤선 도입, 급여별 기준선 마련'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7월부터 '맞춤형 급여' 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개정안에서도 선정기준이나 보장수준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를 빌미로 기존 '최저생계비'가 무력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 살아가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 만큼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한' 공공부조의 틀을 만드는 개념이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해체는 급여별로 자의적인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할 위험성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해체가 권리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급여별 선정기준의 상승과 보장수준 상승을 함께 이뤄내야 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의 권리가 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3. 복잡한 선정기준, 제도가 어려우면 이용하기도 어렵다**

2015년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최저생계비'로 단일화되어 있었으나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각각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2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주거급여 (중위소득43%), 교육급여 (중위소득50%)로 달라지고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3%) 이하 기준의 급여를 받는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수급을 받고 있는 보장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롭게 수급을 신청할 가구들에게 제각각의 선정기준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개념도 쉽지 않은데 각각 기준에 대해 찾아보고, 내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제도는 신청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제도설계 자체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국민들이 신청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충분히 쉽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복잡한 기준과 절차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필요에 맞춘 제도설계와 운영이 절실합니다.

#### 4. 제멋대로 근로능력평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을 받는 '조건부 수급'을 받게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확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수급비가 깎이거나 '조건불이행'이라는 이름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하기도 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정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수급권자들과 가장 근접한 동주민센터 전담공무원의 업무였던 근로능력판정은 객관성 확보라는 명목 하에 2010년 '근로능력 평가제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후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시, 군, 구 단위에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이관받아 시행했고,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었습니다. 2012년 '근로능력있음' 판정 비율은 5.6%에 불과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평가를 시작한 2013년에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15.2%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 받아도 취업할 곳이 없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능력평가는 수급권자들의 이의신청도 묵살하고 있으며 '어쨌든 일을 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하라'는 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이를 연금공단이 인정하지 않거나 취업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에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은 청천벽력같은 일입니다.

단순한 근로능력평가지표 몇 가지로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근로능력평가가 아닌 제대로 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일 할 만한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빈곤층을 내몰 것이 아니라 탈빈곤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5.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에 처해있습니다. OECD가입국 평균 12.6%와 비교했을 때, 4배가량의 압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노인들에게도 매 달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지급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수급비에서 깎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급비 때문에 고통 받다가 기초연금 인상에 희망을 걸었던 빈곤노인들은 '너무 치사하다', '분통이 터진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연금/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수급비와 관계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와 아동양육의 특성상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역시 노인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개념으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겠다는 기초연금은 빈곤상태에 처한 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수급노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수급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6. 가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 간주부양비, 확인(추정)소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내가 벌고 있는 소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확인소득이라는 것이 추정됩니다. 바뀌는 생계급여 1인 가구 선정기준선은 50만원이 채 못 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면 확인소득은 그 이상으로 간주되어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이나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 금액이 법에서 지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할 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은행에 넣어 둔 돈의 이자는 연 4%가 채 되지 않지만, 수급자의 금융재산은 연75%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는 100%가 한 달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나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이 부양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더해져서 나의 소득이 됩니다.

절대빈곤에 놓여 삶이 무너지고 있지만, 건강이 더 나빠져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집을 팔고 더 가난해질 때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 역시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정 국민들의 최저한의 삶과 자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있지도 않은 소득과 부양비를 간주하는 가짜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 4부

# 부록

공공임대주택 정책 둘러보기

의료지원정책 둘러보기

답답할땐? 상담전화

# 부록1. 공공임대주택 정책 둘러보기

##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1) 개요

-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85㎡이하)
- 임대조건 :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30% 범위 내  
※ 수도권 50㎡기준 임대보증금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 임대기간 : 최초2년, 재계약시 2년 2회 연장(최장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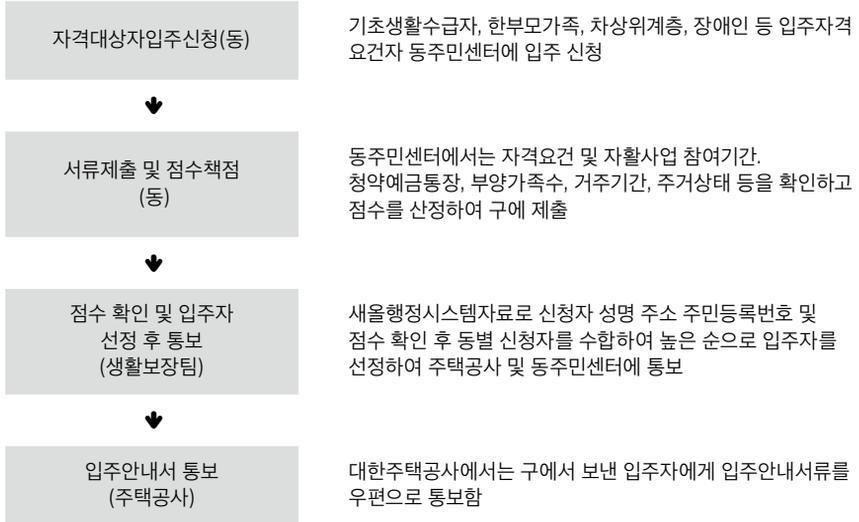
### 2) 입주자 선정기준

- 2인 이상의 가구로 입주선정일 현재 1년이상 자치구(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공급주택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자력생활 가능한 1인 가구 및 장애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중 자력생활이 곤란한 가구도 일부 포함  
※ 1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순위 : 장애인등록자(지적장애,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는 그 배우자 포함)
- 동일순위 내 경쟁시 : 자활사업참여기간(3점~7점),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기간(1점~3점), 부양가족수(1점~3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1점~3점), 최저주거기준미달(3점~4점)  
※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각각 가점 1점 부여

### 3)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청약통장입금내역사본

#### 4) 신청절차



#### 5) 담당부서 및 관련기관

- 각 지역 관할 동주민센터
- 대한주택공사 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1) 개요

-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 8,000만원 이하(수도권),  
광역시 6,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하는 금액  
예) 5,000만원 전세주택일 경우, 보증금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시 2년 단위로 하며 2회 연장(최장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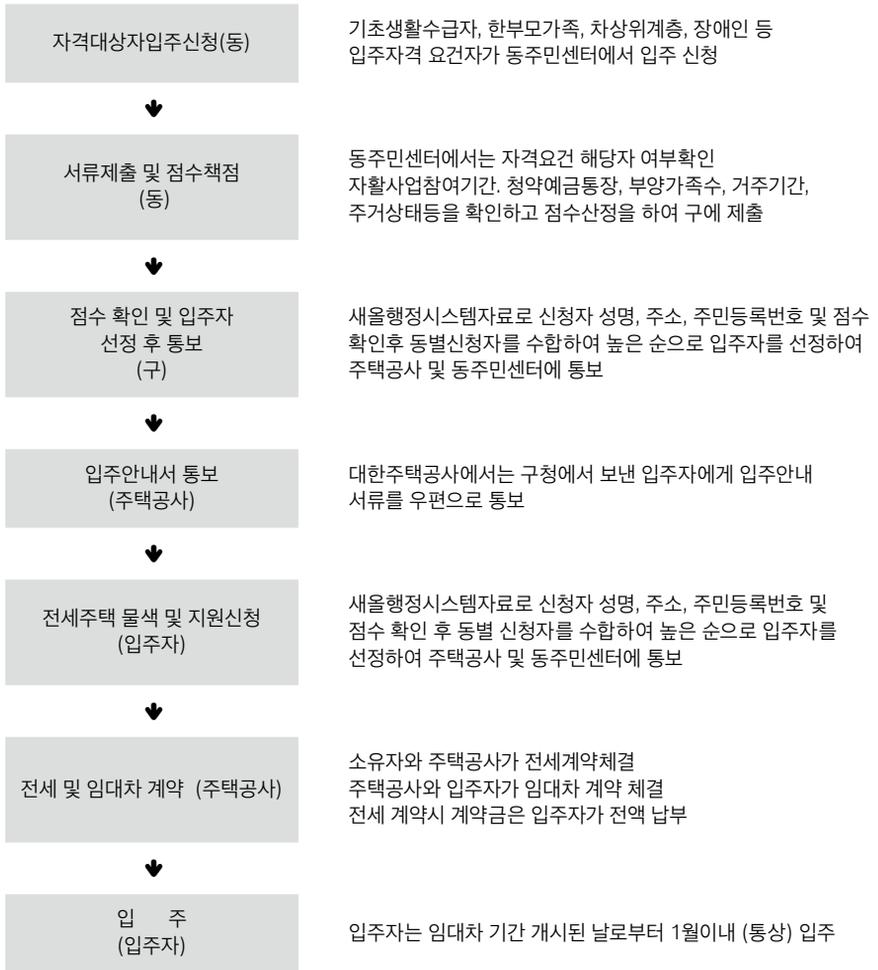
### 2) 입주자 선정기준

- 2인 이상의 가구로 입주선정일 현재 1년이상 자치구(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1인가구도 일부 입주대상에 포함)  
1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 : 장애인등록자(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동일순위 내 경쟁시 : 자활사업참여기간(3점~7점),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기간(1점~3점), 부양가족수(1점~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1점~3점),  
최저주거기준미달(3점~4점)  
※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각각 가점 1점 부여

### 3)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청약통장입금내역사본

### 4) 신청절차



## 5) 담당부서 및 관련기관

- 각 지역 관할 동주민센터
- 대한주택공사 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 1) 사업개요

##### 목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쉼터·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지원대상지역

-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 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

##### 입주대상

- ①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쉼터·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 ②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 소득 등 재산 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토지·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이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중대상자에서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4년 기준) :  
 3인이하가구 4,734,603원, 4인 가구 5,224,645원, 5인 가구 5,560,026원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 2) 사업유형

### (1)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 노숙인쉼터/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	100만원	250~350만원
월임대료	시세의 3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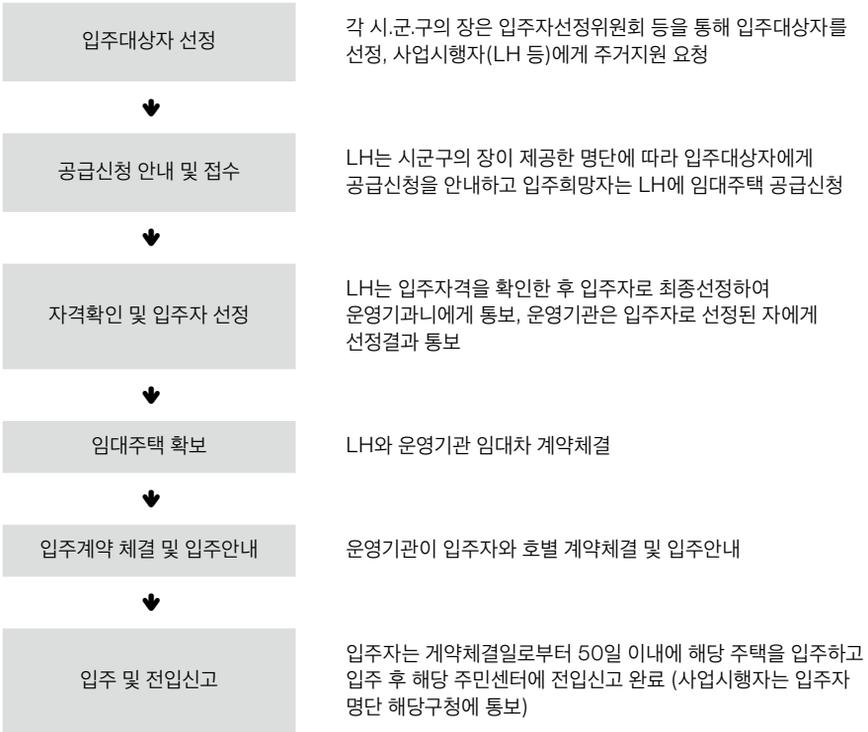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1인 가구는 40㎡이하로 면적 제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50㎡이하 임대주택 지원 가능)

####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에서 운영기관 확인 가능)

## 신청절차



## (2)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 전세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쪽방/고시원/여인숙/ 노숙인쉼터/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6,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8,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채비율(총부채/주택가격)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할 수 없으나, 주택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전세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가능

### 임대조건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 노숙인쉼터/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	50만원	전세지원한도액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내 이자해당액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임대조건의 예 \*수도권, 전세 6,000만원 주택인 경우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 노숙인쉼터/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	50만원	300만원 (6,000만원 × 5%)
월임대료	99,160원 (5,950원 × 2% / 12개월)	95,000원 (5,700만원 × 2% / 12개월)

\*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1인 가구는 50㎡이하로 면적제한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절차** :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동일함.

## 4. 영구임대주택

### 1) 개요

-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총 19만호를 공급한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 수도권 7.4만호, 비수도권 11.6만호
- 관리주체별로 주공 14만호, 지방자치단체 5만호
-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1992년 이후 공급 중단되었기 때문에 신규주택공급은 발생되지 않으며, 기존 입주세대 퇴거시 신규 입주 가능(공급 재개 예정 10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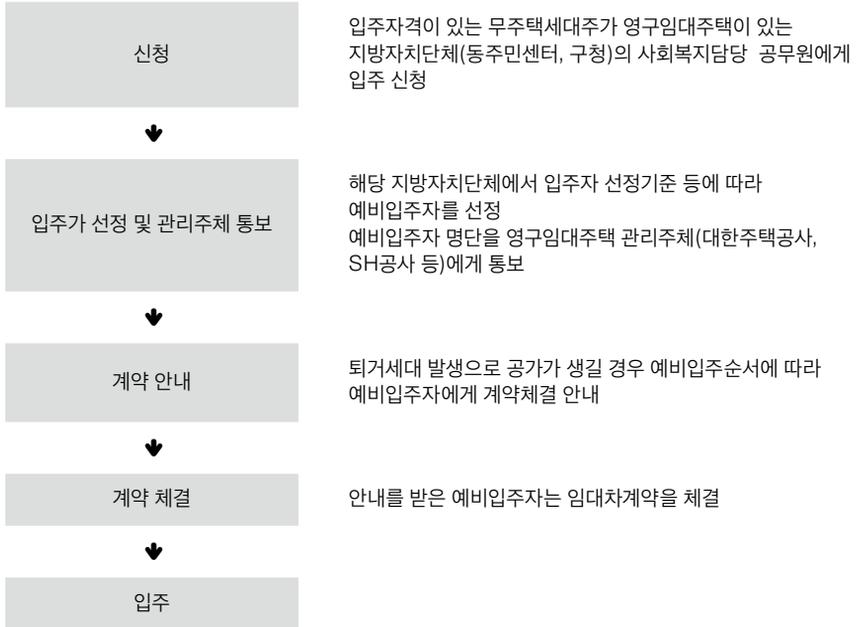
### 2) 입주대상

- 다음 항목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만 입주 가능, 입주자 선정은 ①내지 ⑩,⑨,⑩의 순으로 선정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③ 일군위안부
  -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⑤ 북한이탈주민
  -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로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⑧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한 자
  - ⑨ ①~④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인정하는 자
  - ⑩ 청약저축가입자

### 3) 임대조건

- 입주기간 : 계약기간 2년, 2년 경과 후 입주자격 확인 후 갱신 계약
- 임대료 : 지역별,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차등적용(시세30%이하)  
※ 보증금 250~310만원, 월 임대료 5~6만원

#### 4) 신청절차



#### 5) 담당부서 및 관련기관

- 각 지역 관할 동주민센터
- 대한주택공사 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SH공사, 지방공사 등

## 5. 소년소녀가정 등 주거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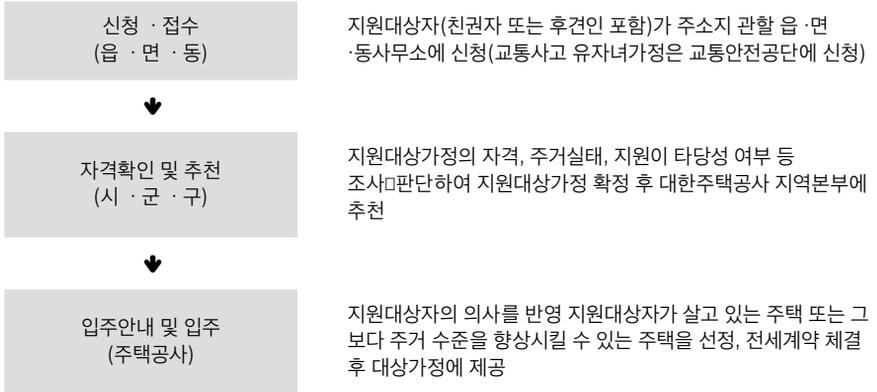
### 1) 개요

- 관리주체 : 대한주택공사
- 대상주택 : 다가구 · 단독주택, 다세대 · 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
- 규모(85㎡)이하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으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교통사고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정위탁아동	
친인척 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자(해당 지자체의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함)

\* 지원신청시 6월 이내에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 신청절차



## 3) 담당부서 및 관련기관

- 각 지역 관할 동주민센터
- 대한주택공사 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부록2. 의료지원정책 둘러보기

### 1. 긴급생계지원제도<sup>1)</sup>

#### 1) 개요

이 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사망,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

① 위기사유와 ②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①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밖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199만원)
-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1 이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 3)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액	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최저생계비의 50%, 100% 차등지원	최대 132만원 (4인 기준)	4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 거소	32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4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10만원 (4인기준)	4회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3월) 연료비 : 1회 제공시 68,000원(총 4회 지급)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50만원 (1회)		

### 4) 신청 또는 문의 시군구처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2. 정부 의료비 지원 사업

### 1)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 개요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4대 중증질환자로서 대상 질환 여부,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 의료비 발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동일 질병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 ※ 기 지원 소아암환자 및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포함한 의료비

#### 지원제외

- ① 특실 상급병실 차액
- ② 간병비, 교통비, 전화 사용료 등
- ③ 요양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한 검사는 인정)
- ④ 미용·성형·예방 목적의 비급여 등, 치과 보철치료 등(구강주위암 제외, 의사 소견서 첨부)
- ⑤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⑥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⑦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⑧ 외국의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대상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11종에 해당하며, 환자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14종의 질환에 해당되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신청한 자 (차상위 2종 수급자 포함)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
혈우병 환자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인,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의료비 지원 범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해당질환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111종 질환자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정세조를 요양기관 외의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의 만성신부전증 (N18)	소득,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소득, 재산기준 + 장애인등록자
호흡보조기 (산소호흡기) 대여료	월 80만원/월 10만원 (중복지원 불가)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소득, 재산조사 면제
간병비	월 30만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1급 등록자 + 소득, 재산기준

- 문의 희귀난치성질환센터(helpline.cdc.go.kr) 02-380-2220~1
- 신청 우리지역 보건소

## 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암종	대상
성인암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암환자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60,000원, 지역가입자는 72,000원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
소아암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폐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폐암환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중 신청시점까지의 보험료 평균금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폐암환자 (건강보험료 기준은 성인암환자와 동일)

구분	지원암종	대상 선정 기준	지원금액 (연간최대)
성인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지원범위) • 암진단과정에서 검사비 • 암 진단일 이후의 암 치료 및 합병증 관련 의료비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3년 연속 지원)
만성신부전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자) 모든 암종	• 전인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항목 100만원 (3년 연속 지원)
소아암 환자	모든 암종	(지원항목)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 백혈병 : 2천만원 • 기타암 : 1천만원 • 조혈모세포이식 : 2천만원
폐암 환자	기관지 및 폐암(C34)	• 암치료 필수 치료재료비 (인공뼈 등) • 항암치료 부작용중 탈모에 따른 가발구입비	정액 100만원 (최대 3년)

- 신청 우리지역 보건소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 4)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 대상

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②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 kg 미만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재대기저부 탈장 등 출생 후(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 의료비 지원

구분	체중	최고지원 금액
미숙아	2.0 kg ~ 2.5 kg 미만	5백만 원
	1.5 kg ~ 2.0 kg 미만	7백만 원
	1.5 kg 미만	1천만 원
선천성 이상아	-	5천만 원

- 신청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 3. 주요 민간단체 의료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heart.or.kr

- 선천성 후천성 심장병, 콩팥이식, 골수이식, 얼굴기형, 기타 질환

#### 어린이재단 childfund.or.kr

- 의료비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kclf.org

- 저소득 소아암 어린이에게 매월 항암치료비 지원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아야 하는 암 및 재생불량성빈혈 어린이에게 이식비용 지원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kord.or.kr

-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한국근육병재단 kmdf.or.kr

- 호흡기, 휠체어 보장구, 특수 책걸상 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chest.or.kr

- 난치병어린이(희귀병, 소아암 등) 의료비 지원, 저소득 노인 의료비지원, 빈곤가구 의료비 지원, 외국인노동자 의료비 지원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 저소득층 모자가정 여성건강권 지원
- 저소득 미숙아지원사업(저소득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치료비, 재활비 지원)

####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heart-heart.org

- 저소득 의료 및 생계지원
- 시각장애 및 저시력 아동 및 청소년의 시력회복지원(각막이식 수술지원, 소아 녹내장 및 백내장, 기타 안과질환)

※ 재단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처 사회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록3. 답답할때? 상담전화!

### 1. 각종 상담전화 \*국번없이

	기관	전화번호	상담내용
복지상담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5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민연금콜센터	1355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종합민원센터
	보건복지 콜센터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임대주택
	빈곤사회연대	02-706-1233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평화주민사랑방(전북)	063-288-9413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융상담 (파산/ 면책)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070-4123-0761	파산, 면책, 금융상담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파산, 면책, 금융상담
홀리스 복지상담	노숙인인권 공동실천단	070-4250-0530	홀리스복지, 홀리스인권상담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02-777-5217~9	홀리스복지상담
	브릿지종합지원센터	02-363-9195.9199	홀리스복지상담
	서울역상담소	02-365-0386 777-0564	홀리스복지상담
	영등포역상담소	02-2676-3727	홀리스복지상담
	위기대응콜센터	1600-9582	홀리스복지상담
인권상담	홀리스행동	02-2634-4331	홀리스복지, 홀리스인권상담
	국가인권위원회	1331*	인권상담
	국민권익위원회	1395*	공익신고(부패행위 등)
	인권운동사랑방	02-365-5363	인권상담
청소년· 자살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성희롱, 성폭력
	생명의전화	1588-9191	위기/자살/도박 상담
	중앙자살예방센터	02-2203-0053	자살예방/상담
장애인 차별·복지 상담	청소년상담전화 헬프콜	1388*	청소년고민, 가출, 구조요청 등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	1670-5529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장애인복지/인권/차별 상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02-6008-2973 02-738-0420	탈시설/자립, 장애인복지
노동·법률 상담	고용노동부	1350*	고용보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민주노총	1577-2260	고용보험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	노동상담, 법률상담
	서울사회공익법센터	1644-0120	법률상담

## 2. LH 주거급여 사무소 (전국49개) 연락처

주거급여 사업소				
	소속	지역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	강남권센터	강남권1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동작구,관악구	02-2182-2752
		강남권2	영등포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강서구	02-2182-2772
	강북권센터	강북권1	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종로구,광진구	02-964-4212
		강북권2	종로구,중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02-764-3167
		강북권3	도봉구,노원구,강북구	02-762-3167
	의정부센터	의정부권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031-590-6637
남양주센터	남양주권	남양주시,가평군,양평군,구리시,하남시	031-875-8517	
인천	주거복지사업부	인천권	인천광역시 남구,남동구,동구,연수구,중구,옹진군	032-890-5850
	부천권센터	부천권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부천시,광명시,시흥시	032-715-5243
	김포권센터	김포권	인천광역시 서구,김포시,강화군	031-8048-5400
	고양파주권주거복지단	고양권	고양시	031-927-0360.1.2
		파주권	파주시	031-944-6213

경기	성남권센터	성남권	성남시,광주시	031-778-3132
	용인권센터	용인권	용인시,이천시,여주시	031-280-4773
	화성권센터	화성권	화성시	031-831-2421
	오산권센터	오산권	오산시,평택시,안성시	031-378-7292
	수원안양권 주거복지단	수원권	수원시	031-8009-0095
		안양권	안양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	031-467-5713~4 031-467-5718
주거복지 사업2부	안산권	안산시	031-411-7140	
부산 울산	주거복지 사업2부	부산권1	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 연제구,수영구,기장군	051-796-6013
		부산권2	부산 사상구,사하구,북구, 강서구	051-796-6032
		부산권3	부산 진구,동구,서구,남구, 중구,영도구	051-796-6052
		울산권	울산광역시(중구,남구,동구, 북구),울주군	052-269-8091
강릉	주거복지 사업부	원주권	원주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	033-760-6253
		춘천권	춘천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033-258-4141
	강릉권센터	강릉권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033-610-5173
		삼척권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033-575-9984

충북	주거복지 사업2부	청주권	청주시(청원군),진천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	043-220-8853
	충북동북부권 센터	충북 동부권	충주시,제천시,단양군,증 평군,괴산군,음성군	043-820-9195
대전 충남	주거복지 사업2부	대전권1	대전광역시 동구,중구,대 덕구,금산군	042-470-0255.7.8
		대전권2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논산시,계룡시,세종시	042-470-0266.8
	천안권센터	천안권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 산군	041-538-5881
	충남서남부권 센터	충남 서남부권	공주시,보령시,서산시,보 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 군,태안군	041-854-8315.8322
전북	주거복지 사업2부	전주권	준저시,진안군.장수군.무 주군.부안군	064-230-6296
		정읍면	정읍시,김제시,남원시,임 실군,고창군,순창군	063-230-6296
	익산권센터	익산권	군산시,익산시,완주군	063-840-0955
광주 전남	주거복지 사업2부	광주권1	광주광역시 동구,북구,담 양군,장성군,함평군,화순 군	062-360-3212
		광주권2	광종과역시 서구,남구,광 산구,나주시,구례군,곡성 군,영광군	062-360-3233
	목포권센터	목포권	목포시,강진군,장흥군,해 남군,영암군,무안군,신안 군,진도군,완도군	061-285-8395
	순천권센터	순천권	순천시,여수시,광양시,보 성군,고흥군	061-755-8506

대구 경북	주거복지 사업2부	대구권1	대구광역시 달서구,남구, 달성군,고령군,성주군	053-603-2771
		대구권2	대구광역시 북구,성구,중 구,수성구,군위군,칠곡군	053-603-2783
	경북동부권 센터	경북동부권1	대구광역시 동구,경주시, 영천시,경산시,청도군	053-350-6031
		경북동부권2	포항시,울릉군,울진군,영 양군,영덕군,청송군	054-280-4720
	경북북구 센터	경북북부권	구미시,안동시,영주시,문 경시,상주시,김천시,예천 군,의성군,봉화군	054-450-2400
	경남	주거복지 사업2부	경남중부권	창원시(마산,진해포함), 통영시,거제시,고성군,합 안군,창녕군,의령군,
경남서부권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 동군,산청군,거창군,합천 군,함양군	055-759-2995
양산권센터		경남동부권	양산시,김해시,밀양시	055-367-7261
제주	주거복지 사업부	제주권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064-720-1039

## 소개합니다

#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2013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2014년 12월 개정안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생보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리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는 전 국민의 권리입니다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복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난에 처한 이들이 복지제도를 이용하는데 낙인이나 편견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나 낙인 없이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의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낮은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이라는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비롯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복지수급의 권리는 ‘알 권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직접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평등하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당한 대우에 수급권자 스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제작했습니다.

## 수급권자가 빈곤정책을 제대로 만듭시다

복지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수급을 받아야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의 힘으로 빈곤정책을 제대로 만듭시다. 가난한 이들의 권리확대를 위해 함께 합시다.

<복지권리 안내수첩>이 빈곤문제 해결과 수급권자 권리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보가 궁금하면 복지상담전화 02-706-1233 으로 문의 바랍니다.

### 함께하는 단체 2015. 7월 현재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평화주민사랑방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홀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